

- 도시계획결정고시 이전 건축물로서 대장상 누락된 건축물 보존여부
- 공익에 부합되지 않고 사도로서 이용될 시 허가여부
- 제2항 2호 라목에 있어 2인이상 필지로 분할한 경우 분할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때 사유재산권 침해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고시후 누락된 건축물의 증·개축에 대한 조치가 조례조항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
- 답 : 제3조2항4호에 의한 대상외는 증·개축이 불가하다고 하였음.

- 문 : 점용허가 기간 명시에 대하여
- 답 : 제3조2항3호가에서 가설건물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라 하였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 6. 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